

대구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1428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4. E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934,52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2023. 9.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3. 9. 6. 접수 제17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124,934,52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아버지이며, 피고 D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대표이사 G과 부부 관계이다.

나.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정산금 채권

1) 원고는 2023. 3.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2023. 3. 10.부터 2023. 4. 30.까지의 기간 내에 처리하고 톤당 1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마친 후 피고 B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134,934,525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23.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고, 2023. 7. 12. 피고 C, D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B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3. 9. 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2023. 9. 1.자 매매계약

1) 피고 B는 2023. 9. 1.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6. 피고 E에 위 매매예약1) 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6건) 및 H 소유인 토지 17필지에 관하여 2023. 8. 25.자 I조합 명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40,000,000원) 및 같은 일자 J조합 명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40,000,000원)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는 별다른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 B, C, D에 대하여 위 정산합의금에서 이미 변제 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①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B에게 위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 E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I조합 및 J조합 명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6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134,934,525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124,934,525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7.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변제기일인 2023.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변제기일 당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 E의 대표이사 G이 피고 B의 대표이사 C의 며느리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그 실질적인 법률상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나) 우선 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피고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를, I조합 및 J조합에 대하여 앞서 본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축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23. 9.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2,512,061,300원이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에 있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그에 설정된 I조합 및 J조합 명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1,6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 B가 2023. 9. 1.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피고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변제기인 2023. 7. 20. 직후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약 한 달 전인 2023. 7. 27. 설립된 회사인 점, ②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며느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 E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종완

별지

1)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20. 9. 1.자 매매예약'으로 잘못 등기되었다가 2023. 11. 14. '2023. 9. 1.자 매매예약'으로 경정되었다.